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1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2.

복지문화 위원회
전 문 위 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2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장호섭 의원 등 6명
- 발의일자: 2024. 2. 2.(금)
- 회부일자: 2024. 2. 2.(금)
- 검토기간: 2024. 2. 5.(월) ~ 2. 8.(목)

2. 제정이유

- 달서구 주민들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0조의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지역 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5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평생유병률은 2016년 25.4%에서 2021년 27.8%로 증가하였고,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.1%만 전문가 도움을 받는 등¹⁾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²⁾.
- 특히 2023년 8월 경기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,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 비율은 2012년 0.3%에서 2021년 0.7%로 증가하였고, 정신장애 강력범죄자 비율은 2012년 2.1%에서 2021년 2.4%로 증가하였음³⁾.
- 이에 따라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역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,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입법적으로 제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.

-
- 1) 정신건강실태조사(2021)에 따르면 성인의 10.7%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며, 1.7%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함.
 - 2)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입원환자 중 비자의 입원율은 2018년 33.5%에서 2022년 35.3%로 증가하였고, 장호섭 의원이 요청한 의정활동참고자료(2024. 1. 24 제출)에 따르면 달서구 응급입원은 2022년 419건에서 2023년 525건으로 증가함.

구분	22년	23년
응급개입	443	510
응급입원	419	525
행정입원	50	53

- 3)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총범죄자 대비 정신장애 범죄자 비율은 2012년 0.3%(5,298명/1,723,815명)에서 2021년 0.7%(8,850명/1,247,680명)로, 정신장애 강력범죄자 비율은 2012년 2.1%(502명/23,789명)에서 2021년 2.4%(545명/22,992명)로 증가하였음.

관계법령

□ 「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- 제50조(응급입원)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.
-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(공휴일은 제외한다)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.
-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.
-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·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